

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

- 2021년도 -

○ 국민건강보험료율

년 도	보 험 료 율
2019	보수월액 × 6.46%
2020	보수월액 × 6.67%
2021	보수월액 × 6.86%

- 2021년도 가입자부담 3.43(50)%, 사용자부담 3.43(50)%씩 과과 부담
 - 노인장기요양보험료
 - 건강보험료의 11.52%(사용자 11.52%, 근로자 11.52%씩 과과 부담)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 개정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

○ 국민연금보험료율

년 도	보 험 료 율
2019	기준소득월액의 9%
2020	기준소득월액의 9%
2021	기준소득월액의 9%

- 2021년도 가입자부담 4.5(50)%, 사용자부담 4.5(50)%씩 과과 부담
- 국민연금법 제42조2항에 의거 매5년마다 조정

○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

사 업 별	보 험 료 율	산 정 기 준
실업급여 (공동 부담)	16/1,000(1.6%)	사용자 부담 8/1,000(0.8%) 근로자 부담 8/1,000(0.8%)
고용안정 · 직업능력 개발사업 (사용자 부담)	2.5/1,000 (0.25%)	상시근로자 150인 미만
	4.5/1,000 (0.45%)	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
	6.5/1,000 (0.65%)	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
	8.5/1,000 (0.85%)	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· 국가 지방자치단체

- 실업급여요율, 고용안정, 직업능력 전년대 동일
-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 개정

○ 산재보험료율(천분율)

사업종류	17	18	19	20	21
일반건설공사(갑)	39	40.5	37.5 (출퇴근재에 1.5포함)	37.3 (출퇴근재에 1.3포함)	37 (출퇴근재에 1포함)
일반건설공사(을)					
중건설공사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				
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.
-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: 보수총액의 1000분의 0.6
- 석면피해분담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: 보수총액의 1000분의 0.03

○ 노무비율(백분율)

사업종류	17	18	19	20	21
일반건설공사(갑)	27 (31)	27 (31)	27 (30)	27 (30)	27 (30)
일반건설공사(을)					
중건설공사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				

- ()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, 건설공사의 계산보험료와 확장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관련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함.
- 20년도 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치 않고 1.3/1,000으로 한다

○ 건설업 월평균임금

년 도	건설업 월평균 보수
2017	3,408,840원
2018	3,619,987원
2019	3,906,885원
2020	4,226,652원
2021	4,330,442원
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.

○ 최저임금

년 도	최 저 임 금		
	시간급	일 급	월 급
2018	7,530	60,240	1,573,770
2018	8,350	66,800	1,745,150
2019	8,590	68,720	1,795,310
2021	8,720	69,760	1,822,480

- 최저임금은 2021.1.1 ~ 2021.12.31.까지 적용
-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(2011. 7. 1일부 5인 이상 의무적용)
- 최저임금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

○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

년 도	사업주 범위(이상)	고용부담기초액 (1인당/월)
2017	75억 7천 5백만원	812천원
2018	75억 7천 5백만원	945천원
2019	86억 8천 1백만원	1,048천원
2020	86억 8천 1백만원	1,078천원
2021	86억 8천 1백만원	1,094천원

- 중 공사실적 기준, 2019년 의무고용율 : 공공기관(3.4%), 민간기업(3.1%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.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.

○ 두루누리 사회보험(고용 · 연금보험료 일부지원)

년 도	월평균보수 / 지원율
2021	2,150,000원 미만(고시기준 이상 소득자 제외) - 5인 미만 신규가입자 90%(1년차90%, 2~3년차 30%지원) - 5인 ~10인 미만 신규가입자 80%(1년차 80%지원)

- 기 지원자 중 2018년 1월 이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최초 지원일 기준 36개월만 지원
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지원자는 2021년 1월부터 두루누리 지원금 중단됨



노동·인적자원관리 전문기관

국제온누리 노무법인

02) 869 - 2385 (代)